●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04)

2022. 9.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04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영희 의원 외 12명

나. 발의일자 : 2022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2. 9. 7.~ 2022. 9. 11.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이 조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안 제2조제5호).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정의규정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지정된 --------- ---------- ----------

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 9. (생 략)	---------- -------. 6. ~ 9.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중앙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음[1].

○ 이러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법[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① 현행법령 정

---

1) 자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75.

2) **「응급의료법」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생략>

의규정에서 쓰이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1. 8. 17.)**된 바 있음[3].

○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1. 11. 25.)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응급의료법」에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 8.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 8. (현행과 같음)

3)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2073), 발의일(2021. 8. 17.) p1.

4)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13642), 제안연월일(2021. 12.) p1, p3.

○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법」에서 개정(시행일: 2022. 12. 22.)된 용어[5]의 뜻을 이 조례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임.

나.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사항 명시 및 약칭(略稱) 적용 관련 (안 제4조 및 제11조제4항).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이 매년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약칭(略稱)을 사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5) **「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중략>

5. **"응급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8. <생략>

[시행일: 2022. 12. 22.] 제2조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③ (생 략)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 시행계획-------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응급의료법」 제13조의2[6]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3[7]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응급의료법」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시행일: 2022. 12. 22.] 제13조의3

○ 이러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법**8)**에서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까지는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었음.

○ 그러나 개정된「응급의료법(2021. 12. 21. 일부개정)」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응급의료 현황' 및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응급의료 시행계획(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이미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현황에 관한 사항',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아울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약칭(略稱)**은 그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단어나 문장 등의 표현을 줄여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표현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적 이유**에서 사용하는 입법기술의 하나인데,

---

8)「응급의료법」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 또는 법체계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통상 그 용어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만약 법령에서 사용되는 **핵심되는 용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칭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9].

- 이러한 이유는 약칭을 사용할 때,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그 조문 이후 사용되는 **약칭의 원래 용어가 무엇인지 찾으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약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약칭만으로도 약칭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명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본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란 용어를 '시행계획'이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약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집행기관 의견(보건의료정책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응급의료

9) 자료: 한영수(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2007), **정의(定義)와 약칭(略稱)**, 법령입안심사기준연구, p152-p161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는 내용이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동의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의문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임.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